# 2019년 대덕승마장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

2019. 9.

DiCO 대구시설공단 감 사 실

# 2019년 대덕승마장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

## Ⅰ 감사배경

○ 2019년 연간감사계획에 의거 대덕승마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코자 함.

## Ⅱ 감사개요

○ 감사기간 : 2019. 9. 9. ~ 9. 17.(5일간)

○ 대상기간 : 2017. 1. 1. ~ 2019. 8. 30.

○ 대상업무

- 대덕승마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
- 공사 물품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
- 시설물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
- 각종 법령위반행위에 관한 사항

## Ⅲ 중점 점검사항

○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무 확인

○ 공단 자산관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

○ 직원 근태관리 등 조직관리 적정성

# Ⅳ 감사결과

## 총 평

❑ **대덕승마장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,**

○ 승마장 고객관리직 직원들의 근무변경 등을 사전에 승인토록 하지 아니하는 등 조직관리, 회계 및 예산집행 등 운영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된

< 다 음 >

① 직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사고가 다수(2019년 5건) 발생 **회원관련**

② 고객관리직 직원이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임의로 근무를 변경

③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관한 사항 **회원관련**

④ 물품 용역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

⑤ 마필관리 및 미활용마에 관한 사항(다수 미활용마 관리대책 미수립)

⑥ 마필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(일부 마필에 강습집중 대책 미수립)

⑦ 마필 급여용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(적정한 시간대 사료 미급식) **회원관련**

⑧ 회원 사물함 관리에 관한 사항(회원 락카 관리 소홀) **회원관련**

⑨ 자마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 **회원관련**

⑪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 **회원관련**

⑫ 안전근무 소홀에 관한 사항(안전근무 소홀) **회원관련**

⑬ 자마 트레이닝에 관한 사항(자마 무료 트레이닝) **회원관련**

⑭ 징계유효기간 내 추가 비위행위에 관한 사항

❑ **자마 트레이닝, 안전근무, 음료 등 편의제공 등 승마장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직원교육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**

# 1 대덕승마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

| 조직관리관련 지적사항 | ① 직원관리에 관한 사항<br>② 고객관리직 직원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<br>③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|
|---|---|

## ① 직원관리에 관한 사항

○ 「인사규정시행내규」 제71조(부서장의 책무) 제1항에 의하면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지도감독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2019.X.XX. ◈◈◈는 초급강습회원 3명을 남겨두고 사전에 양해도 없이 잠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,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승마체험 중 신체접촉으로 인한 민원발생

○ 2019.X.XX. ▲▲▲는 자마회원의 말을 수장대로 이동 중 말이 본인 뜻대로 따라오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리드끈(말을 이동 시킬 때 고삐에 연결하여 잡을 수 있는 줄)을 사용하여 말 목주변을 힘껏 내리친 사실이 있고,

○ 2019.X.XX. ▣▣▣은 공단 말(△△△)을 수장대로 끌고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말만 수장대에 남겨두고 교관실로 갔다온 사이 말이 실내마장으로 들어가 달리던 중 우전지가 복합골절이 되는 사고 발생

○ 개인마주가 공단과 위수탁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실내마장 마방에서 말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있음

○ 2019.X.XX. 마필 급식용 사료가 부패되어 당일 적정한 시간대 급식을 할 수 없는 사건 발생

**감 사 실 의 견**

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조치(문책)

## ② 고객관리직 직원 근태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

○ 「고객관리직 직원 관리내규」 제45조(근무시간 및 유연근무제) 제3항에 의하면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무시간대를 편성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따라서, ◆◆◆◆◆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사정에 따라 근무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근무변경대장을 작성하여 소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◆◆◆◆◆에서는 ▢▢▢ 등 13명의 직원은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음

**감 사 실 의 견**

근무계획을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변경대장을 작성하는 등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(주의)

## ③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

○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제16조(금품 등의 수수 금지)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감사실에서는 2017.6.26. 음료 및 사례물품 등을 일절 받지 않는 아름다운 거절 '마음만 받겠습니다.'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사업부서에 배부한 사실이 있음.

○ 그런데도 마사동내 안장실(1번) 점검결과 자마회원 ◇◇◇이 마필

관리원들에게 제공한 빵과 음료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고, 또한 마사동내 안장실(3번)에도 점검결과 ○○○ 자마회원이 가져온 박카스 6박스(120㎖×10병)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있었음

○ 이와 관련하여 마필관리원 어느 누구 하나도 자마회원이 놓고 간 음식에 대하여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*감 사 실 의 견**

회원들에게 음료 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홍보물을 설치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주의)

## 2 물품 구입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

**물품구입 등 회계관리에 관련 사항**

**① 물품 · 용역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**
**② 마필관리 및 미활용마에 관한 사항**
**③ 마필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**
**④ 마필 급여용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**
**⑤ 회원 사물함 관리에 관한 사항**
**⑥ 자마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**

### ① 물품 · 용역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

○ 「지방계약법」 제17조(검사)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·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◆◆◆◆◆에서는 2017.1.1.~2019.8.31.까지 마필용 사료, 건

초 및 마방에 사용하는 톱밥을 구입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,

○ 2017년~2019년까지 연간 말편자를 교체와 관련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음

**감 사 실 의 견**

◆◆◆◆◆에서는 공사, 용역 및 물품 구입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문서의 이행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토록 조치하고, 반복되는 수선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등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조치(주의)

## ② 마필관리 및 미활용마에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「체육시설관리·운영내규」 제33조(말의진료)에 의하면 수의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여야 하고, 말에 이상이 있거나 부상 도는 질병을 일으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예후가 불량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 및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그런데도 ◆◆◆◆◆에서는 2019.9.3. 현재까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수의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였고, 수의사에 의한 마필 진료를 2017년 XX두, 2018년 XX두, 2019년 XX두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진료 받은 마필에 대한 진료기록(진단서)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마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, ◆◆◆◆◆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단마 XX두 중 23%에 해당하는 X두의 마필이 비활용마로서 강습이나 재활승마를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.

**감 사 실 의 견**

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전담 수의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수의사의 마필 진료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관리토록 하는 한편 장기 미활용마의 관리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(주의)

## ③ 마필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◆◆◆◆◆에서는 마필의 관리와 장기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공단마를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강습 등에 마필을 배정하여야 하며 마필배정 실태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

○ ◆◆◆◆◆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강습 등에 공단 말 XX마리를 배정하면서 일부 말은 혹사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, 특히 마명이 ◁◁를 가진 말이 1,129회 이용하면서 ▷▷는 12회 밖에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〈 2019년 1월~7월까지 이용실적 〉

| 이용율 상위 | | |
|---|---|---|
| 순위 | 마명 | 이용수 |
| 1 | ◁◁ | 1129 |
| 2 | | 1013 |
| 3 | | 738 |
| 4 | | 668 |
| 5 | | 529 |

| 이용율 하위 | | |
|---|---|---|
| 순위 | 마명 | 이용수 |
| 1 | ▷▷ | 12 |
| 2 | | 43 |
| 3 | | 64 |
| 4 | | 66 |
| 5 | | 91 |

**감 사 실 의 견**

◆◆◆◆◆에서 강습 등에 이용 시 특정마필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 마필의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한 마필배정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(주의)

## ④ 마필 급식용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

○ ◆◆◆◆◆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필배식용 사료(호스파원2, 이하 동일)는 유통기한이 1개월로 건조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보관토록하고 있으며, 가급적 제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여토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○ 마필관리매뉴얼(한국마사회, 2002)에 의하면 마필용사료는 변질되기 때문에 2~3주 이상 사용량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런데도 ◆◆◆◆◆에서는 마필급식용 사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9.8.14. 사료 60포 정도는 급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마필에게 적정한 시간대 급식이 공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*감 사 실 의 견**

◆◆◆◆◆에서는 사료의 납품시기(횟수)를 조정하여 유통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하고, 사료 보관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주의)

## ⑤ 회원 사물함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체육시설관리·운영내규 제59조(사물함 및 물품보관함이용)에 따르면 사물함은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하며, 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 후 즉시 열쇠를 체육시설에 반환하여야 하며, 지연반환 할 경우 반환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사물함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에서 공고하는 사물함이용신청 기간 동안에 재신청하도록 되어 있음

○ 탈의실 락커 배정대장에 회원에게 배정된 락커를 3개월이상 장기미사용할 경우 임의 철거함에 동의하며, 임의 철거에 따른 분실 등 어떠한 불이익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고 서명토록 고지하였음.

○ 그런데도 2019년 9월 3일 신발장 및 탈의실 락커(옷장) 점검결과 붙임자료와 같이 신발장 총 78개 중 1인당 2개씩 사물함에 이름표를 붙이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이용객이 10명 있었으며, 이름표가 없는 신발장에 잠금장치 등을 하지 않아 11개의 이름표가 없는 신발장에 승마용 부츠 등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 총합계 21개의 신발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등 신발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,

○ 탈의실 락커(옷장)에 대하여 남자 여자 탈의실 락커 총 138개(남자:86개 여자:52개) 중 남자탈의실 미배정 락커 24개와 여자탈의실 미배정 락커 26개 총합계 50개의 탈의실옷장에 이용객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옷장(락커) 반납 후 개인물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배정 옷장(락커)의 무단사용을 금지시키지 아니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**감 사 실 의 견**

탈의실 물품보관함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고, 사용승인 없이 사용 중인 물품보관함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토록하는 방안을 검토(주의)

## ⑥ 자마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

○ 자마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'자마회원 모집공고'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마를 결정하고, 수탁이 결정된 마주와 공단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 마필을 수탁받아야 함.

○ 그러나 ◆◆◆◆◆에서는 자마회원 ▣▣▣(마명 △△)의 부탁을 받고 실내마장 마방에서 말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있음

**감 사 실 의 견**

자마를 수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수탁마를 결정하고 반드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마필을 수탁관리토록 조치(주의)

# 3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관한 사항

| 청탕금지법 위반 등 관련 사항 | ①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<br>② 안전근무 소홀에 관한 사항<br>③ 자마트레이닝에 관한 사항<br>④ 징계유효기간 내 추가 비위행위에 관한 사항 |
|---|---|

## ①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

○ 「임직원행동강령내규」 제5조의6(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) 및 제16조(금품수수등의 금지)에 의하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도는 조언·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,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(제정적 혜택)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된다.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◆◆◆◆◆ 승마교관 ◇◇◇는 2019.X.XX. XX:XX~XX:XX(3시간)까지 실내마장에서 ◆◆◆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함에도, XX:XX~XX:XX까지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자마회원 ◈◈◈ 말(◉◉)을 소장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무료 자마트레이닝을 실시하여 해당 자마회원에게 개인적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주었으며,

〈야외◆◆◆ 활동 현황〉

| 시 간 | 내 용 | 세부내용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XX:XX~XX:XX(26분) | 무료자마트레이닝 | 장애물넘기 19회 | ◇◇◇(◐◐) |
| XX:XX~XX:XX (8분) | 자마회원 연습보조 | 장애물설치 등 | ○○○(◒◒◒) |
| XX:XX~XX:XX (5분) | 대회경기 연습 | 장애물 넘기 7회 | ○○○(◒◒◒) |
| XX:XX~XX:XX(14분) | 대회경기 연습 | 평보 연습 | ○○○(◒◒◒) |

○ 2019.X.XX. 전라북도 ▼▼군에서 주최하는 전국지구력승마대회에 참석하면서 자마회원 3명(△△△, ◇◇◇, ◎◎◎)으로부터 말을 지원 받아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며,

○ 2019.X.X. ◆◆◆◆◆에서 자마회원 4명(△△△, ◇◇◇, ◎◎◎, ◧◧◧) 함께 ♦♦구 소재의 식당으로 이동하여, 자마회원 △△△이 계산한 5만원(인당 1만원) 상당의 점심을 먹고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,

○ □□□는 폐편자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말편자액자 10개를 만들어 자마회원 4명(△△△, ◇◇◇, ◎◎◎, ◧◧◧)에게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음

## ② 안전근무소홀에 관한 사항

○ 「체육시설관리 · 운영내규」 제12조(안전근무자)에 의하면 ◆◆◆◆◆에서는 이용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승마교관은 안전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.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승마교관 ◇◇◇는 2019.X.XX. 안전관리업무를 해야 할 시간인 XX:XX~XX:XX에 실외마장에서 무단으로 자마회원 ▣▣▣의 말(△△)을 무료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## ③ 무료 자마트레이닝에 관한 사항

○ 「체육시설관리 · 운영내규」 제54조(사용료 등의 부과 · 징수)에 의하면 자마회원의 요청에 의해 자마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1회 2~3만원의 트레이닝 비용을 징구토록 하고 있음.

○ ◆◆◆◆◆ ◇◇◇는 본인이 자마 트레이닝을 실시할 경우 1회

당 2만원의 트레이닝비용을 납부토록 하여야 함에도 2019.X.XX. XX:XX분경 자마회원 ◎◎◎의 부탁을 받고 해당 마주의 말(△△)을 무단으로 트레이닝을 한 사실이 있음.

○ 2019.8월~9월경 자마회원 ◧◧◧의 부탁을 받고 무단으로 무료 트레이닝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.

## Ⅴ 조치결과

### □ 신분상 조치

| 지적사항 | 관련자 | 조치 |
|---|---|---|
| 청탁금지법 위반, 안전근무소홀, | ▣▣▣ | 중징계요구 |
| 청탁금지법 위반 | △△△ | 중징계요구 |
| 사업장 운영 및 관리감독 소홀 | □□□ | 경징계요구 |
| 사업장 운영 및 관리감독 소홀 | ▢▢▢ | 경고조치 |